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708

발의연월일: 2025. 1. 22.

발 의 자:이연희·박상혁·허종식

한준호 • 한민수 • 김남희

이수진 • 복기왕 • 윤종군

박 정 • 이정문 • 문진석

이광희 · 정준호 · 이춘석

손명수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전략기술에 대해 투자세액공제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법인세 공제 방식 한가지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법인세 세액공제는 기업의 영업이익이 발생할 경우 적용이가능하기 때문에 대규모의 초기 투자로 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기업의경우 세액공제가 불가능하고, 이월제도를 통해 향후 이익이 날 경우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국제적 경쟁이 치열해 실질적인 혜택이 절실한 상황임.

또한 미국의 IRA법의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제3자 양도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세계 경쟁력 측면에서도 뒤쳐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미래보다 현재의 지원을 체감할 수 있도

록 해외입법례를 참고하여 투자세액공제에 대해 영업이익이나 손실에 관계없이 직접 환급을 받거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안 제144조의2 및 제144조의3 신설).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2호가목2)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중 "이 조"를 "이 조 및 제144조의2"로 한다.

제144조의2 및 제14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4조의2(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환급 특례) ① 2028 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 자한 금액에 대하여 제24조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 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에 따른 법인세 최저한세액 및 소 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이 조에서 "미공제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환 급세액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51조를 준용하여 환급할 수 있 다.

- ② 제1항에 따른 환급세액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미공제금액을 환급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을 하여야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미공제금액을 환급받은 자 또는 제144조의3제1항에 따라 미공제금액의 환급에 관한 권리를 양도한 자가 투자완료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자산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환급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세액은「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할 세액으로 본다.
- ⑤ 내국인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미공제금액을 환급받은 경우에는 그 미공제금액에 대하여 제144조에 따른 세액공제액의 이 월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⑥ 제1항을 적용할 때 미공제금액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4조의3(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미공제금액 환급 권리의 양도 특례) ① 제144조의2에 따른 미공제금액의 환급에 관한권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양도 요구가 있는 경우에 양도 인 또는 양수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가 있으면 그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의 요구에 지체 없이 따라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환급 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4조의2 및 제144조의3의 개정규정은 국가전략기술의 지정시점 이후부터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 공제되지 아니하고 남아 있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투자한 것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대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	
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용 자산은 제외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투	
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	
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	
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	
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	
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	
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	
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2023	
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	
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제3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공제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공제금액	2
가. 기본공제 금액: 해당 과세	가
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다	

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 액

- 1) (생략)
- 2)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 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이라 한다)에 2027년 12월 31일까지 투 자하는 경우

가) ~ 다) (생 략)

3) (생략)

나. (생 략)

3. (생략)

② ~ ⑤ (생 략)

<신 설>

_
1) (현행과 같음)
2)
<u>이 조 및 제144조의2</u>
가) ~ 다)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3. (② ~ ⑤ (현행과 같음)
- 제144조의2(국가전략기술사업화 시설 투자에 대한 환급 특례) ①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국가전략기술사 업화시설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 여 제24조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 액이 없거나 제132조에 따른 법 인세 최저한세액 및 소득세 최 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이 하 이 조에서 "미공제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환 급세액으로 보아 「국세기본 법」 제51조를 준용하여 환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환급세액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미공제금액을 환급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 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 을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미공제금액을 환급받은 자 또는 제144조의3제 1항에 따라 미공제금액의 환급에 관한 권리를 양도한 자가 투자완료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자산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환급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

<u><신 설></u>

다. 이 경우 해당 세액은 「소득 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할 세액으로 본다.

- ⑤ 내국인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미공제금액을 환급받은 경우에는 그 미공제금액에 대하여 제144조에 따른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⑥ 제1항을 적용할 때 미공제금액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4조의3(국가전략기술사업화 시설 투자에 대한 미공제금액 환급 권리의 양도 특례) ① 제1 44조의2에 따른 미공제금액의 환급에 관한 권리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양도 요구가 있는 경우에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가 있으면 그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

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의 요구에 지체 없이 따라야한다.